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1,279,076	9,638,372
일반회계	268,832,497	8,064,975
특별회계	52,446,579	1,573,397
기타특별회계	52,446,579	1,573,3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60,940	40,828
수질개선특별회계	28,440,952	853,2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1,790	17,754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4,400,000	132,00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2,455	8,17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850,591	355,518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902,967	27,0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6,000	15,78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100,884	123,027

제 2 조 2011년도 세입 · 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936,13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6 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